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법 제29조의2의 행정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27.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공고제목 :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25. 8. 27. ~ 2025. 9. 12. (16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예정된 처분의 내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당사자	성명	이*돈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번길 ***동 ****호(용호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 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 유의사항

- 가.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소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남구청 가족친화과(☎ 051-607-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